

2019년 신원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11. 19. ~ 11. 22. / 4일간
- 감사범위 : 2016. 2. 25.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1)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8조(대가의 지급)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제1항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원면에서는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1일에서 14일을 지체하여 대가를 지급하였고, 대가지

급의 지연 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자 지급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미준수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는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받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신원면에서는 2017.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행사 참석자 보상금 지급 등 #건, #####천원에 대해 채권자별로 지급하지 않고 1인에게 일괄입금 하였으며, %%마을 담장개선공사 관급자재 등 #건, #####천원을 지출하면서 채권자의 입금계좌를 청구서와 대조하지 않고 지급하여 관급자재 대금이 제3자에게 오류 입금 되는 지출 및 지급의 원칙을 미준수하여 세출외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회계서류 작성 및 지출증빙 서류 첨부 소홀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입회)에는 ‘물건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는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하고,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신원면에서는 2017. 4월부터 2017. 5월까지 ##건, #####천원의 계약에 대해 취급자, 지출원, 재무관 날인 누락과 세금계산서 미첨부, 물품검수 미작성, 계약기재사항 미기재, 지역개발공채 미징구 등 회계서류 작성 및 지출증빙 서류 확인, 첨부등 회계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소홀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에는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는 ①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으려면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 주무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신원면에서는 2017. 1월부터 2019. 11월 현재까지 수납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미기재 하거나,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발생한 날짜와 상이하게 기재하였으며, 실제 발생한 예금이자와 다르게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를 소홀히 하여 2019. 11. 감사일 현재 출납부와 계좌의 실제 잔고가 불일치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5) 관외출장여비 집행기준 미준수

-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에는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항에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제5항에는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
-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528 3) 정산방법에는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

- 2017.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관외출장 정산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받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서류가 없어 실제 출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2] 복지분야

1)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경로당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한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안내」 등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산을 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과다 정산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2019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경로당 등 31개 경로당은 2017년, 2018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하였으며, @@경로당 등 23개 경로당은 보조금 용도 외 지출에 대해 반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로당은 2018년 상반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관리 소홀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1인 월 20ℓ 3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거창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으로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각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관련 대장을 구비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신원면은 2017년~ 2019년 동안 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면서 총#,###명 ##,###매에 대해 수령증을 통한 적정 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 「2017년~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의료기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급 ~ 3급, 지적·자폐성 장애 1급 ~ 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을 원할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후 급여관리 제외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 대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지정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하여 필요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관리 지정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업무 소홀

-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 등에 의한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신원면은 ※※※, △△△에 대해 장애재진단 기한일 3개월 이전에 재진단 실시 안내를 하지 않음.
- ※※※에 대해 장애등급 재진단일까지 재진단을 미이행 하여 재진단 촉구 및 장애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재판정 기한이 5개월 지나 재진단을 실시하여 재진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세무분야

1) 재산세대장 정비(과세대상 누락) 소홀

- 『지방세법』 제121조(재산세과세대장의비치등)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현황부과)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춘 것으로 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신원면 ☆☆☆리 ○○○-○ 등 #개 건물은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에서 규정한 건축물로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대장을 정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 「지방세법」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 신원면 ■■■리 산 **-*번지 √√√√√는 물적설비(√√√√√ 건축물)와 인적설비를 갖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장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재산세대장 정비(과세대상 누락) 소홀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 미신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부과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관리(추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건설분야

1) 건설공사 설계검토 소홀 및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는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규정에는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제90호) 제6절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원면에서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설계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㉞㉞㉞㉞ 진출입로 정비공사」 설계내역과 실제사토장의 사토거리의 차이가 있고 「ΦΦ 하도정비공사」는 설계내역에 계상되어 있는 순성토 공정을 미시행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규정에는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규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

준)1항 2호에는 ‘별표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되는 “공사안내간판” 등을 감액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감액을 하지 않고 「○○○○정비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청구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 사용 임차 매매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특성, 계약 수량 및 이행 기간 등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에 의하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1일 가동시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약정,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여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함.
- 신원면에서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공제) 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

여 건설기계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임대한 장비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등으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산업분야

1) 농지불법 전용행위 점검 소홀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11678(2019.4.8.)호 「2019년 농지 불법행위 일제점검 계획통보」와 관련됨.
- 농지를 전용허가·협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 전용허가 등 신청서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 읍·면위임조례에 따라 농지전용의 사후관리과 불법 농지전용 점검을 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2019.4.8.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 불법행위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면서 읍·면에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되었음.
- 신원면에서는 농지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위한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신원면 \$\$\$리 ￥￥¥, ￥￥¥번지에 컨테이너와 자재 등을 적치하여 농지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농지이용 실태조사 소홀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제62조(이행 강제금), 2018년도 농지이

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운영 지침(2018.8)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26122(2018.9.6.)호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 알림」 와 관련됨.

- 1996. 1. 1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 휴경, 임대, 위탁경영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 하기 위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 9. 6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읍·면장에게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시달 하였음.
- 신원면에서는 2018. 10. 4.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2015부터 2018. 6. 기간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전 필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하면서 주말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중 휴경으로 잡목이 자라고 있음에도 처분 대상농지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음.

3)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인력 채용 부적정

- 산림과-16649(2019.9.26.)호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인력 운용계획」 의하면 전문진화대, 초소감시원, 일반감시원중 일반감시원은 읍·면에서 각각 10명씩 자체 선발사역 하도록 되어 있고, 신원면 -10095(2019.10.4.)호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진화감시인력 선발운영계획」 과 관련됨.
- 모집방법으로 서류전형, 체력검정(산악 달리기), 면접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하고, 산불인력 채점 기준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되 경제활동 가족은 제외라고 되어있으며, 체력검정(100m 달리기) 순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신원면에서는 2019년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선발 하면서 부양가족 비경제활동을 가족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점수를 부여(2건)하였으며, 체력검정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함에도 검정 점수를 잘못 부여(2건)하여 선발순위를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산불진화 감시인력을 선발한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1) 민방위대 교육대상자 면제처리 부적정

- 신원면에서는 2017년 민방위교육 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면제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통하여 면제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신청 없이 면제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2) 공용차량 관리 소홀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3조(배차승인)에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동 규칙 제25조(연료사용 정산) 제2항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원면에서는 공용차량 4대를 운용하면서 2017. 2월 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차량배차 및 연료사용 정산을 소홀히 하였으며, 8건의 차량정비 내역을 정비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공용차량의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이륜차 신고업무 처리소홀

- 신원면에서는 이륜차사용신고와 변경신고 접수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등)에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3,000원)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신고를 수리(16건),
- 서명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하거나(3건) 신고서 없이 등록신고(1건), 폐지신고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구비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폐지신고를 수리(16건),
- 사용신고 시 자동차번호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교부하였으며(18건),

- 29건의 신고서류에 대한 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이륜차 신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관리 소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항의 규정에는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신원면에서는 2019년도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별지 1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